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희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, 국민의힘, 산업통상자원위원회, 의안번호 2219794, ' 26. 7. 7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. 7.16(목)까지 사무처로 제출(FAX 032-428-733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주요내용

○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(안 제2조제16호)

*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

○ (하)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,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(안 제68조의5 신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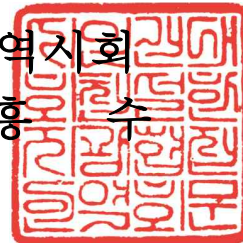
○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(안 제68조의6 신설)

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사원 최현탁 과장 김주현 부장 계박사

시행 전건협 인천 제581호(2026. 7.15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